

【 14 】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폐기물로서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이에 준하는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내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경계가 도로, 하천, 공원, 고가차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9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및 일치여부
2. 폐기물 처리시설·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 실태
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
4. 폐기물처리담당자 및 소속직원 등에 대한 교육
5. 각종 장부, 대장 등의 기록·보존 여부
6. 그 밖에 신고·보고·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관계법규에 위배되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리 보관 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의 폐기물로 또는 가연성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 폐기물의 보관 장소(시설을 포함한다)를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중용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보관시설의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하는~~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4항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그 밖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 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곳에 50 내지 100가구당 1개조(4종이상)의 생활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쓰레기자동집하시설(「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정기적으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거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③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구역(특정 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2. 계약기간
3. 계약금액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시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하여 계율리 한 사실이 없는 한 대행사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제작,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둑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별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당해 폐기물에 부착 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스티커)은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의 3종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색상과 모양은 별표2와 같다.

④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일반마대에 담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평일에는 일몰 후(오후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되, 토·일요일(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및 공휴일(휴일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쓰레기 집하장(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지역 및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4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 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 도,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 ② 규격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5와 같이 한다.

-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전면에는 양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유통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걸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납품량 30만매당 부작위로 1매 이상을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야 한다.
- ④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6(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7)과 같이 하되, 절취형봉투 W형 또는 끈·지퍼·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이미지 제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광고 등의 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규격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업체 또는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시장은 골목길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규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①시장은 지역주민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격봉투판매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점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점포소재지 약도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 지정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매인으로 지정한다.

④판매인 준수사항, 판매인 지정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는 낱개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말한다)
 4.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적정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규격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제4장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26조(민간환경감시원 임명)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계도·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민간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를 유선 또는 문서로써 신고한 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포상금(품)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2.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시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3.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2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시	2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5.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3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5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시에는 위반일시·장소·행위자·불법행위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7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행정처분(행정지도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2.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3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
 3.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이내에 지급한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있~~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30조(행위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제반사항을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행정처분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양주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6조제2항)

1. 대형폐기물

종 별	품 목 별	규 격	수수료(원)
가구류	거 울	1m'이하	2,000
		1m'초과	3,000
	교자상	1m'이하	2,000
		1m'초과	3,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문 갑	모든규격	3,000
	문 짹	모든규격	5,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서랍장	가로 90cm(3자) 5단이하	5,000
		가로 90cm(3자) 5단초과	7,000
	시 계	벽걸이형	3,000
		스탠드형	5,000
	신발장	1m'이하	2,000
		1m'초과	3,000
	소 파	1인용	3,000
		2인용	4,000
		3인용이상	5,000
		웅접탁자	3,000
	식 탁	4인용이하	3,000
		4인용초과	4,000
	쌀 통	다용도	3,000
		일 반	2,000
	싱크대	개수대·찬장(개당)	4,000
		가스렌지 받침(개당)	2,000
	액 자	1m'이하	2,000
		1m'초과	3,000
	의 자	모든규격(개당)	2,000
	장식장	가로90cm(3자)이하(개당)	7,000
		가로90cm(3자)초과(개당)	10,000
	장 놓	가로90cm(3자)이하(개당)	7,000
		가로90cm(3자)초과(개당)	10,000
	책 장	가로90cm(3자)이하(개당)	7,000
		가로90cm(3자)초과(개당)	10,000
	책꽂이	1m'이하	2,000
		1m'초과	3,000

종 별	품 목 별	규 격	수수료(원)
가구류	책 상	세트(편수책상+책꽂이)	6,000
		양수(양쪽서랍)	5,000
		편수(한쪽서랍)	4,000
		협탁(보조책상)	3,000
	침 대	1인용침대 세트(매트리스+받침)	10,000
		1인용침대 매트리스	5,000
		1인용침대 받침대	5,000
		2인용침대 세트(매트리스+받침)	15,000
		2인용침대 매트리스	8,000
		2인용침대 받침대	7,000
	캐비닛	중소형(가로90cm×세로120cm)이하	3,000
		대 형(가로90cm×세로120cm)초과	5,000
	화장대(세트)	모든규격	4,000
전기(전자)제품	가스렌지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렌지	모든규격	4,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30평이하	3,000
		30평초과	5,000
	냉난방기기	20평이하	3,000
		20평초과 ~ 80평이하	5,000
		80평초과	8,000
	냉장고	300ℓ 미만	4,000
		300ℓ 이상 ~ 500ℓ 미만	6,000
		500ℓ 이상	8,000
		김치냉장고(160ℓ 이하)	4,000
		김치냉장고(160ℓ 초과)	6,000
	냉온수기(정수기)	중소형(높이 1m이하)	3,000
		대 형(높이 1m초과)	4,000
	녹즙기(믹서기)	모든규격	2,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3,000
	복사기	모든규격	6,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선풍기	중소형(최소높이 1m이하)	3,000
		대 형(최소높이 1m초과)	4,000
	세탁기	중소형(9kg이하)	4,000
		대 형(9kg초과)	6,000

종 별	품 목 별	규 격	수수료(원)
전기(전자)제품	식기세척(건조)기	4인용이하	3,000
		4인용초과	4,000
	오디오(전축)	본 체	4,000
		스피커(모든규격)	3,000
	게임기	장식장(모든규격)	4,000
		중소형(높이 1m이하)	4,000
	자동판매기	대 형(높이 1m초과)	8,000
		중소형(높이 1m이하)	5,000
	전기장판	대 형(높이 1m초과)	15,000
		모든규격	2,000
	전화기	모든규격	2,000
	청소기	모든규격	4,000
	카세트	모든규격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텔레비전	19인치이하	3,000
		19인치초과	5,000
	컴퓨터	본 체	2,000
		LCD모니터	2,000
		브라운관 모니터	3,000
		키보드	2,000
		스피커(개당)	1,000
		프린터(복합기)	2,000
	팩 스	모든규격	2,000
기타품목	간 판	80cm×120cm이하(입간판)	3,000
		80cm×300cm이하(돌출간판)	5,000
		80cm×300cm초과	8,000
	변 기	양변기, 소변기(성인용)	10,000
		좌변기, 소변기(어린이용)	5,000
	비 데	모든규격	4,000
	호 스	10m당(지름 30mm이하)	2,000
		10m당(지름 30mm초과)	4,000
	수족관(어항)	1m'이하	3,000
		1m'초과	5,000
	옷걸이(행거)	모든규격	2,000
	유 리	1m'당	2,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2,000
	자전거	어린이 및 성인용(두발자전거)	3,000
		아동용(세발자전거)	2,000
	장난감	모든규격	2,000
	장판류	m'당	2,000
	페타이어	모든규격	3,000
	항아리류(화분)	중소형(높이 50cm이하)	2,000
		대 형(높이 50cm초과)	3,000

2.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구 분	품명 및 배출방법	수 수 료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 	<p>50ℓ 포대 (50kg이하기준) 5,000원 (단,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제외)</p>
잡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유리조각 및 조류·개·고양이 등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 	<p>50ℓ 포대 (50kg이하기준) 5,000원</p>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 	<p>50ℓ 포대 (50kg이하기준) 5,000원</p>
도배지·장판·카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자물질이 포함된 합성지(合成紙)로서 재활용이 어려운 도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으로 묶은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 ○ 2성분(二成分)이상의 고분자 물질로 된 영업장, 가정용 장판 또는 카펫 등으로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 	<p>50ℓ 포대 (50kg이하기준) 5,000원</p>
폐목재, 나뭇가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공사장 기타 조경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목재 및 나뭇가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 	<p>50ℓ 포대 (50kg이하기준) 5,000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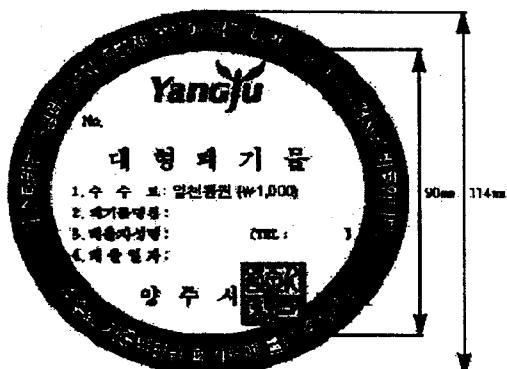
* 위 각 품목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크기, 용량, 부피, 무게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모형 및 규격(제16조제3항 관련)

1. 납부필증 모형 및 규격

납부필증(폐기물 부착용)



영수증(배출자 보관용)

가. 일천원권(녹색)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스티커에 폐기물명칭,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자원과 ☎ 820-2375-8)
금일천원(1,000)	양주시장	

주) 위 영수증은 납부필증의 하단에 칼선을 넣어 한 장으로 인쇄한다.

나. 이천원권(청색)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스티커에 폐기물명칭,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자원과 ☎ 820-2375-8)
금이천원(2,000)	양주시장	

주) 위 영수증은 납부필증의 하단에 칼선을 넣어 한 장으로 인쇄한다.

다. 오천원권(오렌지색)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스티커에 폐기물명칭,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자원과 ☎ 820-2375-8)
금오천원(5,000)	양주시장	

주) 위 영수증은 납부필증의 하단에 칼선을 넣어 한 장으로 인쇄한다.

2. 색상체계



주 색



YANGJU GREEN PANTONE 369C



C70% +Y100%

보조색



YANGJU ORANGE PANTONE 165C



M60% +Y100%



YANGJU YELLOW PANTONE 1375C



M40% +Y100%



YANGJU GRAY PANTONE CoolGray 10C



BL60%

3. 문자체

내 용	글 폰	크 기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 ~ 주십시오	HY 견고딕	16.5pt
대형 폐기물	HY 견고딕	22pt
1. 수수료 ~ 4. 배출일자	산돌명조 M	13pt
금 액	산돌명조 M	14pt
양주시장	HY 견명조	18pt

[별표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6조제5항 관련)

1.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 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 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 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 라목의 합성수지류 중 필름류(과자봉지 등)는 2004년부터 분리하여 배출

2.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 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	◦형광등	-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 전지류,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설정에 맞게 수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
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 형광등은 권역별로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2004년도부터 분리배출품목으
로 지정하여 분리수거 실시

※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2005년
부터 분리수거 실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편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	○ 고철 (공기구·철사못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알미늄·스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의류	○ 면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기타 의류	
라.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기타	○ 기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시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별표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8조 제1항 관련)

1.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구 분	위 탁 자 공급가격	위탁판매 수 수 료		지정판매소 판매가격	지정판매소 이 익 금		주 민 구입가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3ℓ	64	2	3%	66	4	6%	70
5ℓ	109	4	3%	113	7	6%	120
10ℓ	228	7	3%	235	15	6%	250
20ℓ	455	15	3%	470	30	6%	500
50ℓ	1,092	36	3%	1,128	72	6%	1,200
75ℓ	1,638	54	3%	1,692	108	6%	1,800
100ℓ	2,275	75	3%	2,350	150	6%	2,500

※ 판매이윤 : 9%(위탁공급자 3%, 지정판매소 6%)

2.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구 분	위 탁 자 공급가격	위탁판매 수 수 료		지정판매소 판매가격	지정판매소 이 익 금		주 민 구입가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000원권	910	30	3%	940	60	6%	1,000
2,000원권	1,820	60	3%	1,880	120	6%	2,000
5,000원권	4,550	150	3%	4,700	300	6%	5,000

※ 판매이윤 : 9%(위탁공급자 3%, 지정판매소 6%)

3.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구 分	사용용기용량	수 수 료	비 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20ℓ	가구당 월1,300원	부과 : 매월20일 징수 : 매월말일

[별표5]

규격봉투의 용량·규격·색상 및 두께(제19조제2항 관련)

구 분	용량(ℓ)	규 격(cm) (가로×세로)	색 상	호칭 및 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5	26×46.5	백 색	0.030	0.025
	10	33×56.5	엷은녹색	0.030	0.025
	20	42×69.5		0.035	0.030
	50	56×91.5	백 색	0.045	0.040
	75	65×103.5		0.050	0.045
	100	71×113.5		0.055	0.050
재 사 용	10	36×53.5	엷은녹색	0.025	-
	20	45×65.3		0.030	-
음식물 전용	3	22×39.5	엷은황색	0.030	0.025
	5	26×46.5		0.030	0.025
	10	33×56.5		0.030	0.025
	20	42×69.5		0.035	0.030
공 공 용	50	56×91.5	엷은청색	0.045	0.040
	100	71×113.5		0.055	0.050

[별표6]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제20조제4항 관련)

↑ 18cm ↓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50cm ↓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문양</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용 (20ℓ)</p> <p>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p> <p>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p> <p>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장</p> <p>연락처 :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전화 : 820-2375~8)</p> <p style="text-align: center;">↓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문양</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사용용 (20ℓ)</p> <p>-상품을 담아 사용 후 종량제 봉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p> <p>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p> <p>2. 이 봉투는 일반폐기물만 배출이 가능합니다.</p> <p>3.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장</p> <p>연락처 :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전화 : 820-2375~8)</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문양</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용 (20ℓ)</p> <p>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p> <p>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p> <p>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장</p> <p>연락처 :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전화 : 820-2375~8)</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p>
↑ 1.5cm ↓	← 42cm →		

[별표7]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20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양 주 시 문 양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ℓ)

- 음식물류폐기물을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정된 날짜에 내어놓읍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배출처	배 출 요 령
가 정	○ 음식물류폐기물을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병뚜껑, 비닐조각 등)
	○ 개수대에서 1차 침출수 제거(2시간 이상)
	○ 건조용기에서 2차 침출수 제거(1일 이상)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음식업소	○ 음식물류폐기물을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병뚜껑, 비닐조각 등)
	○ 건조용기에 담아 침출수 제거(1일 이상)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양 주 시 장

연락처 : 양주시청 환경자원과(전화 : 820-238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전문개정

□ 개정이유

현행 폐기물 관련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규 인용조항 등 조례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를 양주시 관할구역 내로 하되, 관할 구역의 경계가 도로, 하천, 공원, 고가차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고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 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생활폐기물을 일몰 후(오후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오전6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2005.11.7(월) 개최한 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9월 인상이 후 현재까지 5년간 유지해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그간의 물가인상율과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인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 함(안 제18조)
- 사.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은 절취형 봉투 W형 외에 끈·지퍼·접착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의 이미지 개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해 필요시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광고 유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 아.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함(안 제22조)
- 자.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계도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차.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를 유선 또는 문서로써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개정조례안 : 불임참조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참조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참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63조
- 「산업표준화법」 제2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05.10.18~11.05 수정공고 : '05.11.08.~11.27.)

* 의회의견 반영사항(2005.10.18 의원간담회 협의결과)

-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범위를 제외구역 없이 양주시 전역으로 함(안 제3조)
-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2000년 9월 인상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온 규격봉투가격을 그간의 물가 인상율과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인상함(안 제18조)
-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 유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각 조항에서 개별 위임하도록 함(안 제31조 삭제)

그 밖에 참고사항 : 불임참조

-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